

대법원 2012. 2. 9 선고 2011다9232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상고인

정XX

피고, 피상고인

대한민국

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. 10. 4. 선고 2011나9614 판결

판 결 선 고

2012. 2. 9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